



ESG 운영규정

제정 2021. 03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역삼동 694-9번지) 3층

Tel. 02 6250 5700

Fax. 02 6250 5710

This document may not be copied, reproduced, published or redistributed by any person for any purpose without the express permission of TS Investment in writing.

배경 및 목적

기업경영 및 투자활동에 있어 환경과 사회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당사도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당사는 ESG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본 규정을 마련합니다.

내용 및 구성

본 규정은 국내외 환경 및 사회정책과 관행에 부합하는 경영원칙과 투자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ESG 각각에 해당하는 문단으로 구성되며 각 문단은 경영계획, 투자원칙, 리스크관리,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적용 등

본 규정은 당사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가 투자한 투자기업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각 사안별 이슈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 옹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ESG 운영규정

(제정) 2021.3월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는 지속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회사경영 및 투자의사 결정시 핵심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혁신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Environmental Management(환경경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조와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내외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환경경영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1.1 당사는 환경경영에 대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다.
- 1.2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의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1.3 경영전략 및 투자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이 연계 또는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 1.4 내부구성원들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1.5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1.6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 1.7 투자기업이 자체의 환경성과뿐만 아니라 공급사슬의 환경성과 향상과 제품 책임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1.8 투자업체 선정 및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환경성과를 고려하고 필요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1.9 투자기업의 환경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1.10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 및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한다.

2. Social Management(사회적 책임경영)

당사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부합하는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 2.1 당사는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한다.
- 2.2 포용적 입장에서 근로자의 다양한 고충을 논의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등을 마련한다.
- 2.3 산업안전 및 보건을 경영원칙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2.4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를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 2.5 경영활동 및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거래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2.6 투자기업 및 협력사 등과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 협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 2.7 투자기업 및 협력사 등의 물질적·지적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2.8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권력 남용, 뇌물 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여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 2.9 당사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투자기업 및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지원하며 촉구한다.
- 2.10 투자계약 및 협력사업에 있어 공정성 및 고객의 권익을 보장한다.
- 2.11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며, 적절한 보안 체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 2.12 경영활동 및 투자활동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피드백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13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 모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 2.14 기부금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기부를 포함하여 지식, 기술, 인적·물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2.15 경영활동 및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을 퇴치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3.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에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는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당사 및 투자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3.1 당사의 주주는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3.2 당사는 중요 경영사항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 3.3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전에 제공하고,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4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3.5 당사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 3.6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3.7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3.8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3.9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10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한다.
- 3.1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3.12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3.13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대상기업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3.14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 3.15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3.16 법령 등에서 정한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3.17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이외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3.18 투자기업 및 협력사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로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필요시 그 내역을 공시한다.
- 3.19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거래 등 일체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악용하거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3.20 계약관계 및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권 행사가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갖추며, 투자기업 및 협력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